

홍형철 변호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2」
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4-10-15)

P.302 방주 [33] 내용수정

<기준>

[33] 출제 당시 판례 태도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한, 변경된 판례(2017도3829)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 해설에서는 기존 판례대로 답안을 구성하였다.

<수정>

[33]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수탁자의 죄책에 대한 변경된 판례(2016도18761, 무죄설) 태도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김을남의 2012. 7. 5. 횡령의 점은 변경된 위 판례태도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P.353 판례박스 및 방주 [06] 삭제

<기준>

2. 횡령의 점^[06]*

* [변경 전 판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하 기재 생략)
[변경된 판례] (이하 기재 생략)

가. 2012. 7. 5. 횡령의 점에 대하여

[06] 출제 당시 판례 태도에 의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변경된 판례(2017도3829)에 의하면 이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 답안은 변경 전 판례대로 검토하였다.

반면 변경된 판례태도에 따라 검토할 경우, ① 2012. 7. 5.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전단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추가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② 2020. 1. 28.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전단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설령 (판례와 달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역시 전단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수정>

2. 횡령의 점

가. 2012. 7. 5. 횡령의 점에 대하여